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농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연계해 그 허가(협의)권한을 지자체에 위임¹⁾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지구·지역에 관해서는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그 전용허가(협의)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최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지역·지구를 확대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안 시행령 별표 3 제13호 신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안 시행령 별표 3 제14호 신설)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개정별표

1) 농업진흥지역은 농식품부장관(3ha 이상), 시·도지사(0.3~3ha), 시장·군수(0.3ha 미만) / 비진흥지역은 농식품부장관(30ha 이상), 시·도지사(3~30ha), 시장·군수(3ha 미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호를 신설하고 ‘근거 법령’란에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를, ‘지역 등’란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가한다.
- 제14호를 신설하고 ‘근거 법령’란에는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지역 등’란에는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 제13호 및 제14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별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근거법령	지역 등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관광단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7.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물류단지
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제40조의2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연구개발특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근거법령	지역 등	근거법령	지역 등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관광단지	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관광단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3조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3조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7.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7.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물류단지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물류단지
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40조의2	산업단지 및 공장 입지 유도지구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40조의2	산업단지 및 공장 입지 유도지구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신 설>	<신 설>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신 설>	<신 설>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연구개발 특구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9, 1744